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제 출 일 : 2026. 10. 2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거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거리 지정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7호)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거리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흡연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 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도록 함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1) 협의기간 : 2026. 7. 28. ~ 2026. 8. 6.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6. 8. 20. ~ 2026. 9. 9.(20일간)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소관 과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입안자 (제출자)	과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이 춘 희
	팀장 직위·성명	건강증진팀장 김 세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학 (031-590-4466)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해당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거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양주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남양038)

1. 건강증진과-13075(2026. 8. 4.)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경기남양038)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박미현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2026. 8. 6. 배진위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3482 (2026. 8. 5.) 접수 건강증진과-13197 (2026. 8. 5.)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 4층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ibicf726@korea.kr / 비공개(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38			
정 책 명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김정학	전화번호	031-590-446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8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과)	○ 금연거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05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연/031-590-3965)

건강증진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37)[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12748(2026. 7. 28.)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송호림	청렴유리담장	이정주	감사담장	대결 2026. 7. 30. 박호영	감사관	전결

협조자

시행 감사관-8615 (2026. 7. 30.) 접수 건강증진과-12875 (2026. 7. 30.)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rima@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37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간호7급 김정학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7. 30.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6년 7월 30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예비심사 검토 결과(「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13123(2026. 8. 4.)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요청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등 관련 서류와 법리를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 해당 개정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거리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3. 해당 규제의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므로,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상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제7조(예비심사) 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심사의 결과 그 입법안의 내용에 규제가 포함되었거나 기존규제의 규제가 신설·강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요청한 입안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의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예비심사 결과 해당 규제가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종결한 규제는 규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붙임 규제심사 대상 여부 예비심사 결과서 1부. 끝.

붙임5 입법예고 결과

남양주

남 양 주 보 건 소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건강증진과-14025(2024. 8. 19.)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6. 8. 20. ~ 2026. 9. 9.(20일간)
다.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처리절차 진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건강증진팀장	과장	보건정책과장	대결 2026. 9. 11.
김정학	김세화	이순희	김수연	남양주보건소 전결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상협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건강증진과-15485 접수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보건소 (다산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66 팩스번호 031-590-8129 / wjdgkr7000@korea.kr / 비공개(5)

- 시민주권시대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